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㈜동부에셋자산관리대부

2. 조치일 : 2022. 11. 25.

3. 조치내용

대상	내 용
기관	개선 1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개선사항

⑴ 전화추심 등 채권추심활동 기록 관리 불합리

금융감독원의 「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」 제29조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추심활동을 전산으로 기록·관리하여 임직원의 불법·부당 추심행위 여부를 수시로 관리·감독하여야 하는데도

임직원이 외근 시 개인휴대전화를 추심에 이용하고 있는데도 통화내용이 전산으로 기록되고 있지 않아 통화내용을 관리·감독할 수 없어 불법·부당한 추심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

앞으로 임직원이 휴대전화를 추심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화녹취가 가능한 법인휴대전화를 이용하고 법인휴대전화 통화내용을 기록·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